

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·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·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03. 0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**장**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·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 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 송달 내용	주소
1	이0훈	971228	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	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	1) 1차 출석통지(2023.2.23.), 2차 출석통지(2023.3.6.) 하였으나 송달 불가(반송 사유: 수취인 불명, 폐문 부재) 2)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 연락 또는 방문할 것 3)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 및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됨	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8-9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3. 03. 09. ~ 2023. 03. 23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권윤정(Tel. 031-231-48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